

시 민

문서번호	녹색에너지과-5740
결재일자	2013.3.25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★집단에너지팀장	녹색에너지과장	기후환경본부장
이순재	권민	03/25 임옥기
협조	기후변화정책관 김용복	

2013년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 시행

추진근거	대내(외) 협력 현황			사 업 비
	부서(단체)명	협약내용	협약결과	
도시가스 사업법 제20조 등				20백만원

2013년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 시행

2013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중 적절한 공급비용 산정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을 시행하고자 함

1 추진근거

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(공급규정) 제1항

- 도시가스요금 중 소매요금은 시·도지사가 승인토록 되어 있어 『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』에 의하여 매년 공급비용 산정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도시가스요금 조정 실시

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(지식경제부 지침 '13.3.8)

- 공급비용의 산정기간은 1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고, 매년 7월 1일 까지 확정 및 적용(제3조)

※ 요금 결정 체계

$$\text{도시가스요금} = \text{사용량}(m^3) \times \frac{[\text{도매요금} + \text{소매공급비용}] + \text{기본요금}}{\text{승인권자}}$$

↑ 지식경제부장관 ↑ 서울시장 승인

2 추진방향

- 전문기관의 용역 수행에 따른 조정요금의 객관성·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
- 현행 요금산정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·반영

□ 용역 개요

- 과 제 명 : 2013년도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
- 기 간 :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
- 기 관 : 에너지경제연구원(정부출연기관)
- 계약방법 : 수의계약
- 수의계약사유
 -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2012년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을 전담 수행
 - 서울시내 5개 도시가스 회사의 재무구조 및 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 적정 원가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
 - 공공기관인 관계로 산정된 요금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가능
 - 공공요금으로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, 용역기관의 사업자별 회계정보 분석 차이에 따른 급격한 요금변동 예방
 -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
- 소요예산 : 20,000,000원

□ 공급비용 산정방법

-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각종 회계 비용 분석
 - 물가 및 인건비, 각종 공공요금(비용) 및 도시가스 공급관련 제반 비용의 변동 요인을 감안하여 공급비용 산출

○ 각종 통계 및 지표